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 
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박상혁 위원장입니다.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우리 「헌법」과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등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의무화 시책 추진에 대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고는 합니다. (가칭)동진학교가 13년간 9차례의 후보지 검토 끝에 2025년 10월 착공식을 추진 할 수 있었던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.
- 그러므로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은 “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”이라는 지향점만을

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적·행정적·재정적  
지지가 요구됩니다.

- 특히, (가칭)동진학교 설립이 추진되는 중랑구를 포함해 서울시 내 8개 자치구는 아직까지 특수학교가 단 1곳도 없고, 최근 5개 학년도 동안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 교육대상자가 11.4% 증가할 때 특수학교는 단 1곳도 개교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특수교육기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교는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, 특수교육기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교육감이 지정·고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이를 통해 동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발생과 연계해 특수학교의 설립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고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